

제·개정 이유서

◇ 행정규칙명(고시)

-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

◇ 제·개정 이유

- WTO 정부조달협정에 따라 매 2년마다 SDR 평균환율을 반영하여 국제입찰 대상금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고시

◇ 주요내용

-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」 변경